시내교통비 및 국내출장여비 지급 기준 안내

2022,03,28,

시내교통비 및 국내출장여비 지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- 아 래 -

1. 지급 기준

- 가. 시내교통비
 - 1) 당일 출장에 지원되는 교통비/개인식대에 한정한 비용
 - 2) 매월 1회 시내교통비정산 품의를 통한 개인카드 사용 비용정산
 - 3) 식대는 **당일출장**에 한하며, 실제 개인이 식사한 조식/중식/석식에 한하여 **8천원 하도** 실비
- 나. 국내출장비
 - 1) 1박 이상의 출장에 지원되는 교통비 포함한 숙박비 및 기타비용
 - 2) 출장 1건별 출장명령복명서 품의 작성을 통한 법인카드 사용 비용정산
- ※ 출장 시 발생하는 접대비(접대 식사 포함), 선물대 등 교통비/개인식대와 관련 없는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하며, 팀별 부여되는 회의비 한도 사용함 → **시내교통비/출장비 처리 아님**

2. 교통비 기준

- 가. 법인차량 이용
 - 1) 업무상 목적으로 이동 중 소요된 차량 운행에 대해서 차량을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음
 - 2) 주유비/통행비 반드시 전용 법인카드 사용
- 나. 자차 이용
 - 1) 업무상 목적으로 이동 중 소요된 유류비, 차량유지비용(소모품, 보험료, 감가상각비 등)을 자택-출장처 거리에 따른 수식에 따라 지급하며,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 지급
 - 2) **단순출퇴근 거리는 제외**하되, 자택에서 주근무지 사무실을 경유하여 출장지로 간 경우, 해당구간 주차비와 통행료는 실비지급 (별첨 1 참고)
 - 3) 회사 업무 위해 사용된 차량유지비용을 거리 비례로 지급함에 따라, 자차 이용자의 수리비, 소모품 교체비 미지원
- 다. 공유 자동차 이용(쏘카, 그린카 등)
 - 1) 업무상 목적으로 이동 중 소요된 차량대여비용(기본료+이동거리비례), 통행료, 주차비실비지원
 - 2) 이동 전후 단순 대기시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권장

라. 대중교통 이용시

- 1) 택시 이용 : 영수증 기준 금액을 실비 지급 (행선지 기록 필수)
- 2) 택시 외 대중교통 이용
 - 가) 지하철, 시내버스, 고속버스, 기차(KTX, SRT 등), 비행기 등
 - 나) 시내교통비/출장명령복명서 內 상세내역 첨부

3. 숙박비 및 일비 기준

(단위 : 원)

구 분	교 통 비	숙 박 비	일 당	비고
대표이사	실 비	실 비	20.000	
임 원		70,000 (실 비)	30,000	국내선 항공 이용시 사전 승인 필요 (제주도 제외)
부 장	K T X 기준		25,000	
과장 / 차장	(실 비)			
대리/주임/사원			20,000	

- 가. 교통비는 KTX를 기본으로 하나, 그에 상응하는 금액대의 실제 이용한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지급한다. (예시. 서울-부산 고속버스 탑승)
- 나. 등급은 일반객실/좌석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회사의 승인을 통하여 상향 조정가능하다.
- 다.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은 차량 주행일지 작성 및 주유 영수증 실비처리한다.
- 라. 직위 적용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4. 처리 방법

가. 전월 발생한 내역을 익월 5일까지 품의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(5일이 휴일일 경우 익일)

나. 결재경로 : 차상위자 전결 (참조 : 경영지원팀 이희광 팀장, 유지은 매니저)

1) 팀원 : 소속 팀장 혹은 조직장 전결

2) 팀장/조직장 : 상위 임원 전결

5. 시행일: '22. 3. 1(화)부

* 첨부 : 출장교통비 정산 증빙 양식 1부. 끝.

별첨. 자차 이용 시 지급 기준

1. 기준 계산식

{(유류단가 ÷ 기준연비)×이동거리} + (차량유지비 × 이동거리)

2. 유류 단가 기준

가. 주유 영수증 유류단가 적용

나. 주유 영수증 미첨부 시, 오피넷 공시된 전월 평균 기준 본사 소재지 유종별 유류단가 적용

다. 전기차 : 173.8원/kWh -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

※ 지역별/유류별 조회(클릭) → 인천 체크 후 조회 "인천시 서구" 기준 금액 확인

W URL: http://www.opinet.co.kr/user/dopospdrg/dopOsPdrgAreaSelect.do

3. 기준연비 / 차량 유지비 기준

구분	기준금액
휘발유	10.3
경유	10.4
LPG	7.2
전기차	5.1
차량유지비 (법인차량은 미지급)	93.6

(단위: km/원, km/kWh)

4. 국내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유류대 계산 방법

구분	(예시)유류단가	왕복거리	계산방식
휘발유	1,500원/L	1,000km	{(1,500 ÷ 10.4) × 1,000} + (93.6 × 1,000) = 237,830원
전기	173.8원/kWh	1,000km	{(173.8 ÷ 5.2) × 1,000} + (93.6 × 1,000) = 127,020원

5. 유류대 지원 범위

1) 단순 출퇴근 유류대 지원 불가 단, 자택에서 출장지 간 경우, 해당 경로의 유류대/주차료/통행료 실비 지급

2) 자차로 출장지에 직출/직퇴근시 발생한 주차료, 통행료는 실비지원하되 거리는 자택에서부터 출장지에 간 것으로 계산

실제 차량 이동 경로	국내 출장 및 시내교통비 유류대 지원 경로		
자택→본사→자택	출퇴근 유류대 지원불가		
자택→본사→출장/외근지→자택	본사→출장/외근지→자택		
자택→본사→출장/외근지→본사→자택	본사→출장/외근지→본사→자택		
자택→출장/외근지→자택			
자택→출장/외근지→본사→자택	실 거리 지원 가능		
자택→출장/외근지→본사→출장/외근지→본사→자택			